



통보

다음 고지는 10.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

1. 통보국가: <u>대만, 평후, 진먼 및 마쭈의 별도 관세영역</u> 해당할 경우,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3.2 및 7.2):
2. 담당기관(Agency responsible): 표준검사국(BSMI) 경제부
3. 조항 2.9.2 [X], 2.10.1 [], 5.6.2 [X], 5.7.1 [], 3.2 [], 7.2 [], 기타에 근거해 통보:
4. 해당제품(HS 또는 국정세율 품목. 해당할 경우,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정지형 변환기 (HS 코드: 850440)
5. 제목(페이지 수, 언어, 열람방법):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포함한 3개 전원공급장치의 법정검사요건 개정안; (6페이지, 영어), (4페이지, 중국어) 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https://members.wto.org/crattachments/2026/TBT/TPKM/26_02297_00_e.pdf https://members.wto.org/crattachments/2026/TBT/TPKM/26_02297_00_x.pdf WTO TBT 질의처, tbtenq@bsmi.gov.tw
6. 내용: 제안된 개정안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정지형 변환장치, 기타 스위치 모드 전원공급장치의 세 가지 제품 항목을 다룬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경우, 개정안은 최신 버전을 채택하여 적용 가능한 검사기준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제품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현행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지형 변환장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경이 제안되지 않으며, 제품 재그룹화의 결과로만 개정 범위에 포함되어 사업자에게 적용 요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기타 스위치 모드 전원공급장치의 경우, 개정안은 사업자가 규제 요건과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 검사기준을 도입한다.
7. 적용할 경우,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 인체 건강 또는 안전 보호
8. 관련 문서: 2026년 4월 24일자 정부관보 제32권 제73호. https://gazette.nat.gov.tw/egFront/e_detail.do?metaid=165099 상품검사법 관련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BT/N/TPKM/471 • G/TBT/N/TPKM/248

9. 채택 예정일: 추후결정

시행 예정일: 2027-07-01

10. 의견 제출:

의견 마감일: 2026-06-29

[X] 통보일로부터 60일

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WTO TBT 질의처

표준검사국

경제부

중정구 지난로 1구간 4번지

타이베이시 100, 대만

전화: +(886-2) 23431700#1566

팩스: +(886-2) 23431804

이메일: tbtenq@bsmi.gov.tw